

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

(앞쪽)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	
	(전화번호:)	
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③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

계정 과목	구 분	자체 연구개발비				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	
		인건비 및 사회보험료		재료비 등			
		인원	⑥ 금액	건수	⑦ 금액	건수	⑧ 금액
합 계							
계정 과목	구 분	기타 연구개발비		인력개발비		⑪ 총 계 (⑥+⑦+⑧+⑨+⑩)	
		건수	⑨ 금액	건수	⑩ 금액		
합 계							

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

⑫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(=⑪)	⑬ 직전 4년 발생액 (⑭+⑮+⑯+⑰)	⑭ (직전 1년)	⑮ (직전 2년)	⑯ (직전 3년)	⑰ (직전 4년)
⑱ 직전 4년간 연 평균발생액 (⑬/4)		⑲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[(⑭+⑮+⑯)/3]		⑳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[(⑮+⑯)/2]	
㉑ 증가발생액 (⑫-⑭)					

④ 공제세액

해당 연도 총 발생 금액 공제	중소기업	㉒ 대상금액 (= ㉑)	㉓ 공제율			㉔ 공제세액 (㉒×㉓)
			25%			
	중소기업 유예 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	㉕ 대상금액 (= ㉑)	㉖ 유예기간 종료연도	㉗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	㉘ 공제율	㉙ 공제세액 (㉕×㉘)
					종료 이후 1~3년차 20%(15%) 종료 이후 4~5년차 15%(10%)	
	중견기업	㉚ 대상금액 (= ㉑)	㉛ 공제율			㉜ 공제세액 (㉚×㉛)
			8%			
	일반기업	㉝ 대상금액 (= ㉑)	공제율			㉞ 공제세액 (㉝×㉞)
			㉟ 기본율	㊱ 추가	㊲ 계 (㉟+㊱)	
		0%				
증가발생금액 공제 (직전 4년간 연구·인력개발비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 또는 ㉑<㉒ 경우 공제 제외)		㉑ 대상금액 (= ㉒)	㉒ 공제율		㉓ 공제세액 (㉑×㉒)	*공제율 - 중소기업: 50% - 중견기업: 40% - 대기업: 25%
			%			
㉔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		중소기업 (㉔와 ㉓ 중 선택)				
		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(㉔와 ㉓ 중 선택)				
		중견기업(㉜와 ㉓ 중 선택)				
		일반기업(㉞과 ㉓ 중 선택)				

⑤ 출연금 등 수령명세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단서 관련)

= 연구·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

구분	출연금 교부처	관련 법령	수령일	수령 금액	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

⑥ 연구소/전담부서/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

구분	인정일 (고시일)	취소일	연구개발 인력							
			계		연구전담요원		연구보조원		기 타	
		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'일반연구·인력개발비'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
- "중소기업"이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.
-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"⑥ 금액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가목1)·2)(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분까지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가목1))의 비용을 적습니다.
- 재료비 등의 "⑦ 금액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가목3)·4)·5)·6)의 비용을 적습니다.
-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의 "⑧ 금액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나목의 비용을 적습니다.
- 기타 연구개발비의 "⑨ 금액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을 적습니다.
- 인력개발비의 "⑩ 금액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2호의 비용을 적습니다.
-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의 "㉔ 공제율"란: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20%, 3년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5%의 공제율을 적용하되,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까지는 괄호 안의 공제율을 적습니다.
- 공제율의 "㉕ 추가"란: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·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2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.
- ⑤, ⑥의 "구분"란: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(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).
- "⑤ 출연금 등 수령명세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- "⑥ 연구소/전담부서/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
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

(앞쪽)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	
(전화번호:)		
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③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						
기술명	구 분	계정과목	자체 연구개발비		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	⑨ 기타 연구개발비
			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	⑦ 재료비 등		
합 계						

④ 공제세액							
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	중소기업	⑪ 대상금액 (= ⑩)	공 제 율			⑮ 공제세액 (⑪ × ⑭)	
			⑫ 기본율	⑬ 추가	⑭ 계 (⑫ + ⑬)		
			30%				
	중소기업 외의 기업	⑯ 대상금액 (= ⑩)	⑰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도	공 제 율			⑳ 공제세액 (⑯ × ㉑)
				⑱ 기본율	⑲ 추가	㉒ 계 (⑱ + ⑲)	
			20% 또는 25%				

⑤ 출연금 등 수령명세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단서 관련) = 연구·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					
구분	출연금 교부처	관련 법령	수령일	수령 금액	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

⑥ 연구소/전담부서/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										
구분	인정일 (고시일)	취소일	연구개발 인력							
			계		연구전담요원		연구보조원		기 타	
		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- 신성장·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- 전담부서의 조직·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-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(일반 연구개발업무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) -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-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·부품·원재료·시약류 구입 명세서, 소프트웨어·서체·음원·이미지의 대여·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-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와 신성장·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- 그 밖에 신성장·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- 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'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'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- "중소기업"이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.
 - "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가목1)·2)[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분까지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가목1)]의 비용을 적습니다.
 - "⑦ 재료비 등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가목3)·4)·5)·6)의 비용을 적습니다.
 - "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나목의 비용을 적습니다.
 - "⑨ 기타 연구개발비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을 적습니다.
 - "⑬, ⑰ 추가"란: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.
 - "⑱ 기본율"란: 20%(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25%)를 적습니다.
 - ⑤, ⑥의 "구분"란: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(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).
 - "⑤ 출연금 등 수령명세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 - "⑥ 연구소/전담부서/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▪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▪ 전담부서의 조직·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▪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일반 연구개발업무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) ▪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▪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·부품·원재료·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▪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, 신성장·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▪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'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'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
1. "중소기업"이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.
2. "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가목1)·2)(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분까지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가목1))의 비용을 적습니다.
3. "⑦ 재료비 등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가목3)·4)·5)·6)의 비용을 적습니다.
4. "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나목의 비용을 적습니다.
5. "⑨ 기타 연구개발비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을 적습니다.
6. "⑬, ⑰ 추가"란: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.
7. "⑱ 기본율"란: 30%(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35%)를 적습니다.
8. "㉔, ㉕의 "구분"란: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(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).
9. "㉖ 출연금 등 수령명세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10. "㉗ 연구소/전담부서/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
과 세 연 도	· · · ~ · · ·	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발생 명세	법 인 명	
			사업자 등록번호	

1.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 (단위: 원)

① 연구과제명	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			
	성명	생년월일	인건비 및 사회보험 료 합계액	연구전담 등 구분
합 계				
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
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 (단위: 원)

③ 연구과제명	④ 재료비 등				
	계	건본품 등 (별표 6 1.가.3))	임차료 등 (별표 6 1.가.4))	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비용 (별표 6 1.가.5))	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매비용 (별표 6 1.가.6))
합 계					

3.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(단위: 원)

⑤ 연구 과제명	⑥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						
	위탁(재위탁)연구 또는 공동연구	상호 또는 성명	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	연구착수일	연구종료일	⑦ 금액	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
합 계							

4. 기타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(단위: 원)

⑨ 비용구분	⑩ 기타 연구개발비		
	상호 또는 성명	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 일	⑪ 금액
합 계			

5.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

(단위: 원)

⑫ 비용구분	⑬ 훈련대상자 또는 근로자		⑭ 지급처 또는 구입처		⑮ 금액
	성명	생년월일	상호 또는 성명	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	
합 계					

작성 방법

※ 각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[별지 제3호서식(1)]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
1.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

- 가. "① 연구과제명"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.
- 나. 1명의 연구원이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다. "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"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(1) 자체 연구개발비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"⑥금액"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- 라.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(다만,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, 퇴직급여충당금,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).
- 마. "연구전담 등 구분"란은 []에 '연구전담요원', '연구보조원', '기타' 중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- * "연구전담요원"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 - * "연구보조원"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 - * "기타"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.

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

- 가. "③ 연구과제명"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.
- 나.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을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.
- 다. "④ 재료비 등"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(1) 자체 연구개발비의 재료비 등의 "⑦금액"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
3.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발생 명세

- 가. 해당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나목의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.
- 나. "⑤ 연구과제명"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.
- 다. "⑥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"란은 연구과제 수행 활동을 위탁(재위탁)연구와 공동연구로 구분하여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(재위탁)받거나 공동으로 수행한 기관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(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)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.
- 라. "⑦ 금액"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(1)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의 "⑧금액"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- 마. "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"란은 연구과제의 수행 활동이 위탁(재위탁)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, 위탁·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.

4. 기타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

- 가. 해당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.
- 나. 아래의 작성 사례를 참고하여 기타 연구개발비를 지급처별로 작성합니다.

(단위 : 원)

⑨ 비용구분	⑩ 기타 연구개발비		
	상호 또는 성명	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	⑪ 금액
합 계			17,000,000
직무발명보상금	김00	00.00.00	5,000,000
특허 조사·분석 비용	00특허법인	000-00-00000	12,000,000

다. "⑪ 금액"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(1)의 기타 연구개발비의 "⑨ 금액"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
5.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

- 가. 해당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2호의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.
- 나. 아래의 작성 사례를 참고하여 인력개발 항목별로 작성합니다.

(단위 : 원)

⑫ 비용구분	⑬ 훈련대상자 또는 근로자		⑭ 지급처		⑮ 금액
	성명	생년월일	상호 또는 성명	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	
합 계					12,800,000
위탁훈련비	김00	00.00.00	0000본부	000-00-00000	400,000
위탁훈련비	남00	00.00.00	0000기관	000-00-00000	2,400,000
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	도00	00.00.00	0000공단	000-00-00000	1,800,000
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	라00	00.00.00	0000공단	000-00-00000	3,000,000
생산성 향상 교육			00진흥원	000-00-00000	2,600,000
계약학과 운영비			00대학교	000-00-00000	2,600,000

다. "⑬ 훈련대상자 또는 근로자"란: "⑫ 비용구분"란의 비용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2호가목의 비용(위탁훈련비)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비용 중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0항제4호의 비용(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)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 위탁훈련비가 훈련대상자별로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훈련비 총액을 훈련대상자 총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훈련대상자별로 "⑮ 금액"란에 적습니다.

라. "⑮ 금액"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(1)의 인력개발비의 "⑩ 금액"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
(앞쪽)

과세연도	. . . ~ . . .	해당 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	법 인 명 (상 호)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

(단위: 원)

① 연구 과제명	② 기술 구분 코드	③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			
		성명	생년월일	인건비 및 사회보험료	연구전담 등 구분
합 계					
	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	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	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
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

(단위: 원)

④ 연구 과제명	⑤ 기술 구분코드	⑥ 재료비 등				
		계	건본품 등 (별표 6 1.가.3))	임차료 등 (별표 6 1.가.4))	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비용 (별표 6 1.가.5))	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매비용 (별표 6 1.가.6))
합 계						

3.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

(단위: 원)

⑦ 연구 과제명	⑧ 기술 구분코드	⑨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						
		위탁(재위탁) 연구 또는 공동연구	상호 또는 성명	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	연구착수일	연구종료일	⑩ 금액	⑪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
합 계								

4. 기타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

⑫ 연구 과제명	⑬ 기술 구분코드	⑭ 기타 연구개발비			
		⑮ 비용구분	상호 또는 성명	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	⑯ 금액
합 계					

작성 방법

※ 각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[별지 제3호서식(2)]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[별지 제3호서식(3)]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또한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 연구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.

※ 공통 사항

- 가. "①, ④, ⑦, ⑫ 연구과제명"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.
나. "②, ⑤, ⑧, ⑬ 기술구분 코드"란은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"01",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"02"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1.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

- 가.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(다만,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, 퇴직급여충당금,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).
- 나. "③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" 중 ② 기술구분코드가 "01"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(2) 자체 연구개발비의 "⑥인건비 및 사회보험료"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하며, ② 기술구분코드가 "02"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(3) 자체 연구개발비의 "⑥인건비 및 사회보험료"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- 다. "연구전담 등 구분"란은 []에 '연구전담요원', '연구보조원', '기타' 중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- * "연구전담요원"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 - * "연구보조원"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 - * "기타"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.

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

- 가. "⑥ 재료비 등"란은 ④ 연구과제 및 ⑤ 기술구분 코드를 구분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건본품 등을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.
- 나. "⑥ 재료비 등" 중 ⑤ 기술구분코드가 "01"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(2) 자체 연구개발비의 "⑦ 재료비 등"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하며, ⑤ 기술구분코드가 "02"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(3) 자체 연구개발비의 "⑦ 재료비 등"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
3.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

- 가. 해당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 비용을 적습니다.
- 나. "⑨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"란은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(재위탁) 연구와 공동연구로 구분하여 위탁(재위탁) 받거나 공동으로 수행한 기관의 현황 등을 적습니다.
- 다. "⑩ 금액"중 ⑧ 기술구분코드가 "01"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(2) "⑧ 위탁 및 공동연구 개발비"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하며, ⑧ 기술구분코드가 "02"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(3) "⑧ 위탁 및 공동연구 개발비"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- 라. "⑪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"란은 연구과제의 수행 활동이 위탁(재위탁)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, 위탁·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.

4. 기타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

- 가. "⑮ 비용구분"란은 ⑫ 연구과제 및 ⑬ 기술구분 코드를 구분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에 대하여 작성하며, 작성 방법은 별지 제3호서식 부표(1) 작성방법란 제4호나목의 작성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"⑮ 금액"중 ⑬ 기술구분코드가 "01"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(2) "⑨ 기타 연구개발비"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하며, ⑬ 기술구분코드가 "02"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(3) "⑨ 기타 연구개발비"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
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

과세연도 ~

사업자등록번호

1.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

(단위: 원)

[illegible]

작성방법

※ 각 과세연도에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[별지 제3호서식 부표(1) 서식] 또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·원천 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[별지 제3호서식 부표(2) 서식]에 포함된 직원 또는 전담요원의 인건비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
※ ⑤ 인건비 지급액의 합계는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[별지 제3호서식 부표(1) 서식]의 1.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의 합계와 해당 연도의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명세[별지 제3호서식 부표(2)]의 1.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의 합계를 더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.